# 제53-1차
# 임시이사회
# 회의록

▌일시: 2026년 11월 18일(수) 17:00

▌방식: 온라인(Zoom)

한국언론학회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 진행 순서

❑ 진행 전창영 총무이사
❑ 기록 김다빈 사무국장

**▌성원 보고 및 개회**

**▌학회장 인사**

**▌의결 안건**

**[제1호 안건]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고 및 기금 활용 승인에 관한 건**

**▌신입회원 인준**

**▌기타 논의사항**

**▌폐회**

[별도 제공] 신입회원 신청자 제출 서류

## ▌성원 보고 및 개회

**제24조 (이사회정족수)**
이사회는 회장 및 차기회장을 포함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참석 대상: 총 59명

□ 출석 인원: 총 54명(참석: 22명, 학회장 위임: 31명, 제3자 위임: 1명)

## ▌학회장 인사

□ 제53대 한국언론학회장 홍 경 수

## ▌의결 안건

### [제1호 안건] 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기금 활용 승인에 관한 건

### Ⅰ. 제안 및 추진 경과

1. 제안 배경

· 제53대 집행부는 2026년 10월 17일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제52대 집행부로부터 업무 및 재무자료를 인계받았음. 이후 2026년 11월 2일까지 인수인계서의 비용 귀속 및 이월액 산정 내용이 수정되었음. 수정 인수인계서(11월 2일 기준)를 토대로 재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미수금 회수, 기존 미지급금과 임대보증금의 정산 및 11월 사무국 운영비 지급을 모두 반영한 예상 가용잔액은 약 -696만 원임.

· 사무국 및 집행부 필수 운영을 위해 매월 약 1,292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개월간 약 4,572만 원의 추가 운영자금 부족이 예상됨. 이에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제안한 기금 활용 방안의 승인 여부를 의결하고자 함.

2. 추진 경과

| 일자 | 주요 내용 |
|---|---|
| 2026.10.17. | 제52대 회장 이임 및 제53대 회장 취임 |
| 2026.11.02. | 인수인계서 재무현황 수정본 확인 |
| 2026.11.12. | 제2차 기금관리위원회 개최 |
| 2026.11.13. | 일반기금 조성에 관여한 전임 학회장 4인의 동의 확보 및<br>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
| 2026.11.18. | 제53-1차 임시이사회 개최 |

## Ⅱ. 관련 정관 및 규정

### 1.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2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34조 (기금관리 위원회)**
1. 학회 기금 모금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2.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기금의 사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① 기금 원금의 사용 및 기금의 해지

**제6조의2 (기금 원금의 사용 및 기금의 해지)**

1. 기금의 지출은 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범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기부자가 목적을 지정한 기금의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는다.

## Ⅲ. 재정 현황 및 운영자금 소요

### 1. 금융자산 구성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 전체 금융계좌 잔액 | 895,617,493 | 총 62개 계좌 |
| 기금 원금 | 650,800,000 | 쌍용·포철·중앙일보·희관언론상·일반기금·37대 기금 |
| 기금 제외 계좌 잔액 | 학술지·연구용역·지원사업 등 목적성 금액 포함 | 학술지·연구용역·지원사업 등 목적성 금액 포함 |

※10월 26일 기준

### 2. 현재 가용예산 정리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 A. 가용예산 | 59,091,394 | |
| B. 학술대회 미지급금 | 70,080,000 | |
| C. 연건동 보증금 | 10,000,000 | |
| D. 미수금 회수 이전 잔액 | -20,988,606 | A-B-C |
| E. 미수금 | 26,950,000 | |
| **F. 미수금 회수 이후 가용액** | 5,961,394 | D+E |

※10월 26일 기준

### 3. 11월 사무국 운영비 정산 후 예상 가용잔액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 가용액 | 5,961,394 | |
| 11월 사무국 운영비 | 12,920,240 | 사무국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
| **11월 운영비 지급 후 잔액** | -6,958,846 | |

### 4. 향후 3개월 운영자금 소요 전망

| 구분 | 금액(원) | 참고 |
|---|---|---|
| 사무국 운영비 예상 지출액 | 38,760,720 | 12,920,240/개월 × 3개월 |
| 11월 경상비 지급 후 잔액 | -6,958,846 | |
| **향후 3개월 예상 부족액** | **45,719,566** | |

## Ⅳ.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고

### 1. 제2차 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경과

· 2026년 11월 12일(목) 제2차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2대와 제53대 집행부 간 재정 인수인계 과정 및 제53대 집행부의 운영자금 부족 상황을 보고하고, 일반기금 4,000만 원의 활용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였음.

▲ 참석자: 김춘식(위원장), 홍경수, 홍원식, 홍주현, 임종수, 심재웅, 전창영(이상 위원)

· 위원회는 사무국의 인건비와 필수 경상비 지급을 위한 자금 확보가 시급하고,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다만 학회 운영비를 위한 일반기금 사용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과 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특히 일반기금은 여러 역대 집행부가 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조성한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 조성에 관여한 역대 회장들의 뜻을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선행하기로 논의하였음.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일반기금 원금의 즉시 사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음(〈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의2에 근거하였음).

**제6조의2 (기금 원금의 사용 및 기금의 해지)**

① 기금의 지출은 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범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기부자가 목적을 지정한 기금의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는다.**

## 2. 역대 회장 동의 확보

· 제2차 기금관리위원회 논의에 따라 일반기금 조성에 관여한 전임 학회장 4인(27대 차배근, 30대 박명진, 31대 이창근, 33대 한균태)에게 학회 재정 상황, 기금 활용의 필요성 및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하였음.

· 이후 전임 학회장 4인의 동의를 모두 확보하였으며, 기금 조성 취지를 존중하면서 학회 운영 지원을 위한 활용 방안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음.

## 3. 기금관리위원회 후속 심의·의결 결과

· 전임 학회장 4인의 동의 확보 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반기금 활용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였음.

· 심의·의결 대상은 일반기금 4,000만 원의 활용이며, 사용 목적은 제53대 집행부 출범 초기 사무국의 필수 운영비 확보와 재정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ERP 등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 비용임.

· 다만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기금 원금의 집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해야 함.

**제6조 (위원회의 직무)**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기금 원금의 사용 및 기금의 해지

## 4.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요청

· 위와 같은 심의 경과와 역대 회장 동의 확보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학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기금 원금 4,000만 원 활용에 대한 최종 승인이 필요함.

·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실제 집행은 관련 회계절차와 증빙관리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

## V. 이사회 의결 사항

### 1. 의결 취지

·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일반기금 조성에 관여한 전임 학회장 4인의 동의를 확보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친 일반기금 4,000만 원 활용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요청함.

### 2. 승인 요청 내용

· 대상 기금: 일반기금

· 요청 금액: 40,000,000원

· 사용 범위: 사무국 운영비 및 ERP 등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 3. 제1호 안건 의결문

> 본 이사회는 한국언론학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일반기금 조성에 관여한 전임 학회장 4인의 동의를 확보한 일반기금 원금 40,000,000원의 활용을 승인한다.

### 4. 의결 결과

· 참석 이사: 54명

·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

· 의결 결과: 가결

## ▌신입회원 인준

1. 관련 규정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학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5.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 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7조 (공로회원)**
공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학회 활동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신입회원 가입 신청자(총 33명: 정회원 30명, 준회원 3명)

1) 정회원: 30명

| 연번 | 성명 | 현 직 | 최종학위 | 해당 조항 |
|---|---|---|---|---|
| 1 | 강*선 | 부산대학교 강사 | 박사 | 제6조3항 |
| 2 | 고*승 | 부산대학교 강사 | 박사 | 제6조3항 |
| 3 | 김*은 | 이데일리 기자 | 박사 | 제6조4항 |
| 4 | 김*재 | 국민대학교 강사 | 박사 | 제6조3항 |

| 연번 | 성명 | 현 직 | 최종학위 | 해당 조항 |
|---|---|---|---|---|
| 5 | 김*정 | 건국대학교 강사 | 박사 | 제6조3항 |
| 6 | 김*영 | 삼육대학교 교직원 | 박사 | 제6조3항 |
| 7 | 김*민 | 언론중재위원회 팀장 | 박사 | 제6조3항 |
| 8 | 김*경 | 계명대학교 조교수 | 박사 | 제6조1항 |
| 9 | 김*재 | 국립부경대학교 강사 | 박사 | 제6조3항 |
| 10 | 류*현 | 광운대 겸임교수 | 박사 | 제6조3항 |
| 11 | 마*현 | 한양대학교 강사 | 박사 | 제6조3항 |
| 12 | 박*형 | KBS 카메라 감독 | 석사 | 제6조4항 |
| 13 | 박*흥 | 세명대학교 부교수 | 석사 | 제6조1항 |
| 14 | 박*환 | 국립경국대학교 조교수 | 박사 | 제6조1항 |
| 15 | 박*아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박사 | 제6조3항 |
| 16 | 심*선 | 연세대학교 교수 | 박사 | 제6조3항 |
| 17 | 안*우 | 국민대학교 조교수 | 박사 | 제6조1항 |
| 18 | 원*경 | 동의대학교 강사 | 박사 | 제6조3항 |
| 19 | 윤*성 | EBS 차장 | 석사 | 제6조4항 |
| 20 | 윤*세 | SBS 차장 | 석사 | 제6조4항 |
| 21 | 이*경 | ㈜부스터즈 이사 | 박사 | 제6조3항 |
| 22 | 이*재 | KBS 기자 | 석사 | 제6조4항 |
| 23 | 이*주 | 서울신문사 기자 | 석사 | 제6조4항 |
| 24 | 이*인 |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 박사 | 제6조3항 |

| 연번 | 성명 | 현 직 | 최종학위 | 해당 조항 |
|---|---|---|---|---|
| 25 | 장*초 | | 박사 | 제6조3항 |
| 26 | 정*남 | 숭실대학교 조교수 | 박사 | 제6조1항 |
| 27 | 정*일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박사 | 제6조3항 |
| 28 | 최*영 | 서강대학교 부교수 | 박사 | 제6조1항 |
| 29 | 최*진 | 언론중재위원회 팀장 | 박사 | 제6조3항 |
| 30 | 홍*예 | | 박사 | 제6조3항 |

2) 준회원: 3명

| 연번 | 성명 | 현 직 | 최종학위 | 해당 조항 |
|---|---|---|---|---|
| 1 | 김*연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석사 | 제8조제1항 |
| 2 | 서*아 | 숙명여자대학교 특임교수 | 석사 | 제8조제1항 |
| 3 | 윤*운 |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 석사 | 제8조제1항 |

### 3. 의결 결과

· 정회원 신청자 30명, 준회원 신청자 3명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친 결과 신청자 전원을 승인함

## ▌기타 논의사항

· 회원가입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청 회원 수시 승인 방식 검토를 요청함

· 장기 회비 미납 회원의 학회 활동 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회 행사 초청 및 위원회 구성 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함

## ▌폐회